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4일, 서삼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삼석 의원)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가.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제3항의 폐기·반송·회수·소독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현행법 상 위임근거 미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출입국자 등에 대한 식물검역 안내 및 교육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개정안은 출입국자 등에 대한 식물검역 정보 안내 및 교육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건수를 감소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탁송품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개정안은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제12조제7항1))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 규정(제50조제3항제3호의3²⁾)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 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